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차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법인차를 경영진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통해 출고가 기준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엔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한다고 고지했다.

신규 등록 차량은 물론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중고로 양도받는 경우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나 리스 혹은 관용 차량도 8000만원을 넘는다면 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 다만 2024년 이전에 등록된 고가 법인차는 제외된다.

시행 초기 국토교통부는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업무용 법인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기준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고가의 전기차를 포함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 [S리포트] '아빠찬스' 그만...연두색 번호판 효과는

[법인차, '편의' 아닌 '특혜' 논란]① 기업 세제 혜택 취지 벗어난 경우 '多'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52410400231613

올해 1월 도입된 '연녹색'(연두색) 번호판이 구설에 올랐다. '특혜' 지적이 나온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실효성 의문은 끊이지 않는다. 법인차 판매량은 새로운 정책 시행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현재는 사실상 원상 복귀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일반 등록 번호판과 구분되는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적용 색상은 '연녹색'으로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해당된다.

## '집만큼 비싼' 슈퍼카, 업무용 논란

정부가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 건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이른바 '아빠찬스'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연구용역을 비롯, 대국민 공청회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 사용과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 외에도 1년 이상 장기렌 트와 관용차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가격이 비싼 전기차 등을 감안, 배기량 대신 '가격'을 새 번호판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종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 할증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당초 윤 대통령의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슈퍼카)의 사적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인데다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한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2018~2022년 5년간 신규 등록 차종은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 중 71.3%가 법인차다. 4억원 초과 차종은 88.4%가 해당됐다.

법인차는 말 그대로 개인이 아닌 법인이 구매, 사용하는 차를 의미한다. 정부는 법인 업무용 차에 세제혜택, 경비처리, 부가세 환급,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업무용 차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추가로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이용하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